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3307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330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가합313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조창영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고석원

변론종결 2023. 11. 8.

판결선고 2023. 12. 20.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가합313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4,606,6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 제2항에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연대보증서의 존재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작성일자 공란인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6. 30. 자신의 남편인 E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계약으로 발생하는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체결된 광주 서구 Q, 1층 및 4층(이하 '이 사건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동의한 사실만 있을 뿐,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E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은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한편 설령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점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1,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의 인영임이 인정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와 더불어 피고가 2013. 4. 9.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한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이 인정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서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G 호남 네이버 밴드에 이 사건 대리점의 이름으로 활동하였고, 대리점 간의 거래에도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로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대리점을 E, 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 E 또는 C의 대리점 운영을 돕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영업에 관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의 효력 범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백지수표 기재보충권 제공증서에는 근보증의 채권최고액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책임을 40,000,000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은 당사사 사이에 후일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약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는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C,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훈, 판사 김제욱, 판사 박영주